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급여팀장 백영기 [6581] 과장 고영옥 [6573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7726호

시행일자 2018. 9. 20.

수 신 각 시·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및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

- 보건복지부, 고시 제2018-197호(2018. 9. 18)
- 보건복지부, 예비급여과-2103호(2018. 9. 18)
- 보건복지부, 고시 제2018-198호(2018. 9. 19)
- 보건복지부, 예비급여과-2115호(2018. 9. 19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및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가 개정되어 이를 안내하여 온 바,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귀 회 회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 개정사항

[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]

- 뇌·혈관(뇌·경부)의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 수가 개정 등
- 뇌·혈관 분야 등의 중증·필수 의료 개선 등

[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]

- 뇌·혈관·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
- 관절질환 중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에 대한 세부 적응증 구체화

(대의협 제813-7726호)

시행일자 2018. 9. 20

○ 시행일: 2018년 10월 1일

○ 보건복지부 연락처: 044-202-2668, 2669

붙임: 고시개정문 및 질의응답 각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.”